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682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의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39조의9에 따른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가스배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9제2항에 따라 가스배관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1인으로 한다.

④ 가스배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39조의9제5항에 따라 가스배관위원회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재정사항에 관하여 전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2. 가스배관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가스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장이 연구·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⑦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11 및 제39조의12에 따른 심의·재정(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연구, 용역, 고문 또는 자문을 제공한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스배관위원회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스배관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의4(재정의 신청 등) ①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신청서를 가스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분쟁의 내용

4. 당사자 간 협의 경과

5. 그 밖에 이용 조건 및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 사본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 내용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

으며, 당사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가스배관위원회는 재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재정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당사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가 감정(鑑定)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스배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제19조의5(운영 및 재정 규정)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배관위원회의 운영, 심의 및 재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의2(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39조의9에 따른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가스배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u>②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u> <u>③ 법 제39조의9제2항에 따라 가스배관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1인으로 한다.</u> <u>④ 가스배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u>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39조의9제5항에 따라 가스배관위원회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재정사항에 관하여 전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2. 가스배관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가스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장이 연구·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⑦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신 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①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11 및 제39조의12에 따른 심의

· 재정(이하 이 조에서 “사건”

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

른 친족을 말한다)의 관계에 있

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

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연구, 용역, 고문 또는 자문을 제공한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스배관위원회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스배관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

<신 설>

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의4(재정의 신청 등) ①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신청서를 가스배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분쟁의 내용

4. 당사자 간 협의 경과

5. 그 밖에 이용 조건 및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 사본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 내용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가스배관위원회는 재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재정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당사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가 감정(鑑定)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스배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수당과 여비, 그

<u><신 설></u>	<u>밖에 필요한 비용은 감정을 신</u> <u>청한 자가 부담한다.</u> <u>제19조의5(운영 및 재정 규정) 제</u> <u>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u> <u>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u> <u>배관위원회의 운영, 심의 및 재</u> <u>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u> <u>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u> <u>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5238